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24
----------	-----------

제안일자 : 2023. 04. 27.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사업대상지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 간선도로변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 이 밖에 자구 정리사항을 반영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역세권 범위 350미터 이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호가목).
- 간선도로변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나목).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

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 제>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를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로,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 제>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촉진지구지정 등”을 “촉진지구지정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삭 제>

안 제11조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사전자문 요청분부터”를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로 하고, “사전자문 신청 1년 이내”를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인정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p> <p>1.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 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 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 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 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신 설 ></p>	<p><u>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 --.</p> <p>1. “<u>대중교통 중심지역</u>”이란 <u>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 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 한 지역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을 포함 한다.</u></p> <p>가. “<u>역세권</u>”이란 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서 지 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 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 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 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와 주변개</p>	<p><u>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 --.</p> <p>1. ----- ----- ----- <u>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p>가. “<u>역세권</u>”이란 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서 지 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 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 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범위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청년주택”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

2. “청년안심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공급하

2. (개정안과 같음)

스텔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3. ~ 6. (생략)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2. (생략)

②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제안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자

③ (생략)

제5조(사업대상지) 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대상지) 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가.·나. (개정안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제5조(사업대상지)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우 :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2.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

④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최초 인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생략)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자

③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④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최초 인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

-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

④ (개정안과 같음)

⑤·⑥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2.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3.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촉진지구지정 등** 고시일 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촉진지구지정등** -----

2. <삭제>

3.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

<p>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 시행자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 시행자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결정 등 이행) ----- ----- 제7조제1항----- ----- ----- 제3항 및 제4항----- ----- ----- ----- -----.</p>
--	--	---

개정안	수정안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역세권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역세권 범위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u>사전자문 요청분부터</u>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역세권 범위 규정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u>사전자문 신청 1년 이내</u>에 토지를 매입(매매계약)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사업 범위를 <u>인정한다</u>.</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역세권 범위에 대한 적용례) ----- ----- -----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 ----- ----. ----- ----- ----- -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중교통중심 지역”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년주택”이란”을 ““청년안심주택 (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으로,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역세권 내외”를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로, “역세권에”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항의”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축진지구지정등”을 “축진지구지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제14조제2항제1호 중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대료의 부과·징수”를 “임대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주거비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역세권 범위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역세권 범위 규정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매매계약)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중교통 중심 지역</u>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 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역세권</u>”이란 <u>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 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 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 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 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 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 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대중교통 중심지역</u>----- ----- ----- ----- -----.</p> <p>제2조(정의) ----- -----.</p> <p>1. “<u>대중교통 중심지역</u>”이란 <u>지 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 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 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 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u></p>

있다.

2. “청년주택”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청년안심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3. ~ 6. (생략)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2. (생략)

②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제안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자

----- 대중교통 중심지역 -----

-----.

가.·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최초 인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생략)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2.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3.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

④ -----
----- 제3항의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생략)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축
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이하 “축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
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대상지가 축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③·④ (생략)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

-----.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

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촉진지구지정등 -----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 제7조제1항-----

-----.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

-----.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특례

② ~ ④ (생략)

제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역세권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청년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2. ~ 7. (생략)

8.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 지원

9. (생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대중교통 중심지역 -----

--

2. ~ 7. (현행과 같음)

8. 임대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주거비지원 -----

9. (현행과 같음)